

10. 所得稅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재정경제원공고 제1997-113호 1997. 12. 4

개정이유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기업의 소비적인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는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수익중 상장법인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비과세함.

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이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신탁부금 불입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종업원이 퇴직함에 따라 받는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일

시금신탁금을 퇴직소득에 따라 받는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금을 퇴직소득에 합산하도록 하는 등 퇴직보험과 관련된 세무처리 기준을 마련함.

다.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필요경비인정되는 기밀비의 한도가 출자금의 1퍼센트와 총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접대비 필요경비한도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를 인정하도록 함.

라.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운영기준에 따라 수납하는 금액으로 함.
- 마. 현재는 소득세신고서에 각종 준비금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세무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의 제출을 대폭 축소함.

바. 현재는 피상속인이 수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인별로 각각 1채씩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별로 1주택씩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앞으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채의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주택회보